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99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권향엽・김기표・박지원

이해식 • 이재관 • 박지혜

허 영·박해철·주철현

김남근 · 김 윤 · 장종태

황명선 · 오세희 · 이광희

박용갑 • 임미애 의원

(1791)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을 국민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 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림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크

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에도 투표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 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등).
- 다.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제 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 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함(제12장의2 신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

제14조제1항 중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 ·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을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 다.

제1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區·市·邑·面의 長"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邑 ·面에"를 "군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각각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투표인명부(이하 "통합투표인명부"라 한다)를 작성 하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통합투표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투표인명부를 출력한 다음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투표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투표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 력한 투표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한다.

제21조제1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 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 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 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제1항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區·市·邑·面의 長"을 "구·시·군의

장"으로, "區・市・邑・面"을 "구・시・군"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중 "郵便投票"를 "우편투표 및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제5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제5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가 끝난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되는 사전투표함을 말한다)을 인계받은 때에는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한다.

제97조제5항 중 "第19條의 規定에"를 "제19조 및 제98조의3제5항에도"로, "投票人名簿"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로 한다. 제12장의2(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8조의2(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

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 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 한다)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투표일 전 30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20일까지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

의 다음 날부터 10일간

-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투표가 있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8조의3(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제14조제 1항에 따라 작성되는 투표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는 각각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며, 해당 국민투표에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제98조의4(준용규정)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 및 송부, 재외국민투표운동,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국민투표의 투·개표 등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제104조 중 "投票人名簿作成"을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投票所"를 "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2條(投票人의 定義) 이 法에서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있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 載된 者를 말한다.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 第7條(投票權) 19세 이상의 國民 은 投票權이 있다. 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 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國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 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 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함한다) • 시(구가 설치되지 아 니한 시를 말한다) • 군(이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다)・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 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 -----주민등록이 되 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 어 있는 투표권자(제98조의3제 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 5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 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다)은 國民投票日公告日 현재 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投票區 別로 調査하여 國民投票日公告 日로부터 5日 이내에 投票人名 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國內居住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國民投票日 현재에 스스로 投票所에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國民投票日公告日로부터 5日이내에 區· 市·邑·面의 長에게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郵便은 無料로 한다.

- 1. ~ 3. (생략)
- ③ 區·市·邑·面의 長은 第2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을 때에는 投票人名簿에 이를 표 시하는 동시에 不在者申告人名 簿를 投票區別로 따로 작성하 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 ⑦ 區・市・邑・面의 長은 投

(2)
구ㆍ시ㆍ
군의 장
,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구·시·군의 장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③ 구·시·군의 장

票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 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 本 1通을 管轄區·市·郡選擧 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생 략)

- 第15條(名簿作成의 監督) ① (생략)
 - ② 區·市·邑·面의 長과 投票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任免된 때에는 당해 區·市·邑·面의 長은 지체없이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區·市·邑·面의 長이 事故로 인하여다른 者가 그 職務를 代理하게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投票人名簿의 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과 投票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을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任免權者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特別市・廣域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 ④ <u>區・市・邑・面의 長</u>과 投

8	(현행3	라 같음	을)			
15個	条(名簿	作成의	의 監	督)	1	(현
행고	과 같음	-)				
2	구・시] • 군	의 징			
				<u>구</u>	- •)	५ •
<u>군</u>	<u> 의 장</u> -					
		구 • 스] • 군	의	장	
3						
- <u>구</u>	•시•	군의	장			
4	구・시] • 군	의 징			

票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 員이 정당한 이유없이 投票人 名簿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 ·郡選擧管理委員會의 指示· 命令 또는 是正要求에 不應하 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 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 會는 任免權者에게 그 替任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第16條(名簿閱覽) ① 區·市·邑
 ·面의 長은 投票人名簿作成滿
 了日의 다음 날로부터 3日間
 場所를 정하여 投票人名簿를
 閱覽하게 하여야 하며, 投票權
 者의 편의를 위하여 閱覽期間
 중 區·市에 있어서는 統別, 邑
 ·面에 있어서는 里別의 投票
 人名簿謄本을 統·里의 長이
 지정하는 場所에 비치하여 供
 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第17條(異議申請) ① 投票權者는 누구든지 投票人名簿에 漏落・

⑤ (현행과 같음)
第16條(名簿閱覽) ① <u>구・시・군</u>
의 장
<u>군</u> 에

誤記 또는 資格이 없는 投票人 이 登載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 는 書面으로 당해 區・市・邑 •面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하 여 그 修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區・市・邑・面의 長이 第1 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日 이내에 審查・決定하되 異議가 정당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 시 投票人名簿를 修正하고 申 請人・관계인과 管轄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 니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 을 申請人・관계인과 管轄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書面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第18條(異議決定에 대한 不服申 第 請)①(생 략)
 - ②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第1項의 再審要求를 받은 때에는 2日 이내에 審査・決定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

<u>구·시·군의</u>
<u> 장</u>
② <u>구·시·군의 장</u>
<u>.</u>
第18條(異議決定에 대한 不服申
請) ① (현행과 같음)
②
<u>구·시·군의 장</u>

하여 投票人名簿를 修正하게 하고 즉시 申請人과 관계인에 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관계 인과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다.

<신 설>

 - <u>구·시·군의 장</u>

- 제19조의2(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투표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투표인명부(이하 "통합투표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③ 통합투표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일에 투표소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투표인 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 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 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 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 력한 투표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 •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⑥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투 표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 하여 출력한 투표인명부의 보 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20條(投票人名簿의 再作成) ① 天災・地變 기타의 事故로 인 하여 필요한 때에는 區・市・ 邑・面의 長은 다시 投票人名 군의 장------

第20條(投票人名簿의 再作成) ①

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한 投票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投票人名簿를 다시 작 성하지 아니하고 그 投票人名 簿謄本에 의한다.

② (생략)

第21條(名簿寫本의 교부) ① 區· 市·邑·面의 長은 國民投票日 公告日 현재 國會에 交涉團體 를 구성한 政黨(이하 "政黨"이 라 한다)의 申請이 있는 때에 는 확정된 投票人名簿 또는 不 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 1通을 그 名簿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人名簿寫本 및 不在者申告人名簿寫本의 交付申請은 投票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確定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49條(國民投票日의 公告) 大統 領은 늦어도 國民投票日전 18 日까지 國民投票日과 國民投票

,
② (현행과 같음)
第21條(名簿寫本의 교부) ① 구ㆍ
<u>시·군의 장</u>
②
<u>구·시·군</u>
<u>의 장</u>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
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

案을 동시에 公告하여야 한다.

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 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 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 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30일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신 설>

第56條(投票通知票交付) ① 區・ 彦

市・邑・面의 長은 投票通知票를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投票人(投票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投票日전 2日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⑤ 區·市·邑·面의 長과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通知票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區·市·邑·面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投票權者중에서 政黨이指名하는 者(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人씩 立會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있다.</u>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
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
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
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56條(投票通知票交付) ① <u>구・</u>
<u>시·군의 장</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구·시·군의 장</u>
<u>구·시</u>
<u>· 군</u>

- ⑥ · ⑦ (생 략) 第75條(開票開始) ① ・ ② (생 략)
 - ③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이를 즉시 郵便投票用 投票函 에 投入・보관하여야 하며, 投 票日 下午 6時早日 開票參觀人 의 참여하에 本人이 發送한 여 부를 확인하고 外封套를 開封 하여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같이 混合하여 開票한다.

<신 설>

⑥ · ⑦ (현행과 같음) 第75條(開票開始) ① ・ ② (현행 과 같음) 는 郵便投票를 접수할 때에는 우편투표 및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제51조의2에 따라 준 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 <u>조제6항제</u>1호에 따라 등기우편 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말한 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사전투표함(제51조의2에 따 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 전투표가 끝난 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되는 사 전투표함을 말한다)을 인계받 은 때에는 투표함의 봉함・봉 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 第97條(再投票) ① ~ ④ (생략)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는 判決에 명시가 없는 한 第1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投票에 사용된 投票人名簿를 사용한다.
 - ⑥ ~ ⑧ (생 략) <신 설>

<신 설>

한다.

第97條(再投票)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
- 조 및 제98조의3제5항에도----
- ------투표
- <u>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u>
- ----.
- ⑥ ~ ⑧ (현행과 같음)제12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특례
- 제98조의2(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투표권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하여야한다.이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한다.
 -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

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 이 예정된 사람

-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 니할 사람
-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 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 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 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 고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 인 등록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국민투표일 전 30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20일까지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간
-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 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국민투표가 있는 때마다 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7일 동안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

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 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 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 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 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 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는 각각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며, 해당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98조의4(준용규정)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 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 및

<신 설>

第104條(職權濫用에 의한 投票의 自由妨害罪) 國民投票에 관하 여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警察公務員 기타의 관계 公務員이나 投票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가 故意로 投票人 名簿의 閱覽을 방해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하거나 投票通知票 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職權 을 濫用하여 投票의 自由를 방 해하는 때에는 7年 이하의 懲 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108條(投票나 開票의 干涉罪) ① 投票所나 開票所에서 정당

송부, 재외국민투표운동, 재외 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국민 투표의 투·개표 등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재외국민투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 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준 용한다. 第104條(職權濫用에 의한 投票의 自由妨害罪) ----------<u>투표인명부(재</u>외투 표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

第108條(投票나 開票의 干渉罪) ① 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재외 한 이유없이 投票나 開票에 간 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섭한 者 또는 投票를 勸誘하거	에서 같다)
나 기타 投票 또는 開票에 영	
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